
2022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2022. 7.



농림축산식품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 「2022년 감사업무 추진계획」 수립(‘22.1.7. 차관결재)
* 농어촌희망재단 감사 요청(‘22.5.11, 농촌여성정책팀-1515호)
2. (감사목적)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기금 등 포함)의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21 국정감사 시 제기(이양수 의원)된 농어촌희망재단 운영실태 점검
3. (감사대상) 농어촌희망재단 등 5개소
 - 농어촌희망재단,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4. (감사범위) 최근 3년간(‘19~‘21) 우리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농어촌희망재단은 사무국 운영 전반 포함)에 관한 사항
5. (감사기간) 2022. 5. 30. ~ 6. 10. (8일, 6.1. 지방선거, 6.6. 현충일 제외)
6. (감사인원) 감사담당관 외 7명(농촌여성정책팀 1명 포함)

Ⅱ 감사 결과

1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신규 선정심사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 대상기관 선정심사 시에는 공정.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심사단계별 심사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최종단계인 전문가 심의회에서 1단계(자체평가), 2단계(전문가 서류평가) 심사와 다르게 특정 기관을 선정 또는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평가내역 등을 명시하지 않음

농어촌희망재단

- ① 사업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시 전(前)단계 평가 결과와 다르게 선정 또는 제외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평가내역을 기재토록 조치 요구 (통보)
- ② 구체적인 심사내역 없이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통보)

2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는 '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한

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후에는 위원·항목별 평가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음

농어촌희망재단

- ①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제안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 (통보)
- ②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제안서 평가 점수를 공개하도록 조치 (통보)

3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라 회계 직무 담당자는 재정보증 없이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도,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수행함

농어촌희망재단

-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라 회계의 지출원인행위, 지출, 물품관리 및 물품출납 등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통보)

4	재단 경상경비 및 한국마사회 기부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		
처분요구	권고, 통보	조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예산집행지침」의 소모성 경비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영수증을 지정양식에 따라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최근 3년간(2019~2021년) 재단 경상경비 및 한국마사회 기부금으로 편성한 업무추진비와 운영관리비 등을 집행하고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지정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농어촌희망재단	
① 경영 투명성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지침」의 경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권고) ②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 (통보)	

5	재단 경상경비 지급수수료 관련 활동결과보고서 미비		
처분요구	권고, 통보	조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예산집행지침」의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내부결산비, 대외활동비 및 대외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목적에 맞는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 최근 3년간(2019~2021년) 희망재단 경상경비로 지출한 지급수수료 중

내부결산비 항목에 대한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외하고, 대외활동비 및 대외활동수당 항목에 대한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음

농어촌희망재단

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지침」의 지급수수료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권고)

② 앞으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활동실적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 (통보)

6	참외 자조금 소비홍보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 “2021년 참외 자조금 사업추진 집행절차 및 기준 알림”에 따라 소비홍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수막, 관계자, 원물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고, 시식용 참외 구입 시 행사 당일 시세표를 첨부하여야 하나,
 - 현수막 등 안내판에 ‘자조금’ 관련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회원농협의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등 자조금 사업의 홍보 효과를 떨어뜨리는 상태로 운영함
 - 홍보행사용 원물(참외)을 구입하면서 당일 시세표의 가격(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를 참고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 없이 농협별로 임의적으로 적용함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자조금 활용 소비촉진 사업 추진 시 현수막 등에 ‘자조금’ 관련 문구를 명시하고, 시식용 원물은 당일 시세표에 따라 구입하는 등 자조금 사업 홍보 효과 제고 및 효율적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 요구 (통보)

7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	관계기관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 계약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 공고한 적격성 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방식과 다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며, 입찰공고 기간도 10일 미만으로 공고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게시하지 않음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합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나,
 - 기술능력평가 전 가격을 먼저 평가하고 평가위원의 평가표에 가격점수를 미리 기재하여 평가위원이 가격점수를 보고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함
-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 이행사항의 이상 여부 등 필요한 검사를 14일 이내에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하나,
 - ‘참외 광고대행 사업 용역’ 등 2건을 검수검사 조서 없이 대가를 지급함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입찰가격 개찰 부적정, 계약에 대한 검수 및 검사조서 작성하지 않은 참외생산자연합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계약업무를 추진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도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 등 요구 (통보)

8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	관계기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되, 예산의 조기집행, 긴급 재해예방·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 3건은 긴급입찰에 대한 내부 결정사항 없이 40일 미만으로 공고하였고, 재공고입찰 2건은 10일 미만으로 공고함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입찰한 7건은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퍼센트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여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점수 고득점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 1건은 협상적격자 기준(기술능력 점수 68점, 배점의 85%)에 미치지 않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공고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계약하였고,
 - 6건은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입찰공고문에는 종합점수 70점 이상,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80점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하였음
- 계약시 7건은 지체상금률을 기준보다 높게 하였고, 2건은 상호 협의 하에 지체상금 부과 규정없이 계약함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을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서로 다르게 정하며, 규정과 다른 지체상금률로 계약한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기관주의” 조치 (기관주의)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공고기간과 지체상금 부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 (통보)

9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비에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직원의 해외출장을 명령하면서 일비 외 수화물, 통신, 샘플구입 비용 491천 원을 별도 지급함
- 동일 지역에 장기간(15일 이상) 체류시에는 초과일수에 따라 일정분의 일비를 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동일지역에 85일간 체류한 직원의 일비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여 531천 원을 과다 지급함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① 2021년 직원에게 지급한 국외여비 중 과다 지급된 1,022,253원을 회수하여 반납하도록 조치 (시정)
- ② 직원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 (통보)

10	GAP 교육지원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 “GAP 교육지원 사업 제안서”에 따라 교육 시작·종료 시 자필로 서명 (2회/일)하는 등 교육생 출결관리를 명확히 하고, 교육 종료 시 교육 내용·강사·인프라 등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교육 등록부’에 교육 시작시 1회만 서명하고 있어 교육생 출결관리가 불명확하고,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특정 강사가 대부분 강의를 담당(3명/22명, 67.8%)하며, 강의실 대관을 교육시간 보다 적게

대여(24회/126회)하는 등 GAP 교육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함

- “GAP 교육지원 사업 제안서”에 따라 사업비 집행 중 식비는 1식 10,000원 이내로 하되 식비 내역자료는 인원×단가로 하여야 하나,
 - 교육인원 보다 많은 인원의 식비 집행(10회), 식비 단가(1식 10,000원 이내)를 초과하여 집행(5회), 교육 일정과 무관한 식비 집행(5회) 등 총 20회에 걸쳐 사업비를 GAP 교육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함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① GAP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GAP 교육 제안서에 따라 교육시간 준수, 교육생 출결관리 철저, 교육 만족도 조사 통한 불만족 사항 개선하는 등 효율적 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식비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GAP 교육 제안서에 따라 교육인원, 단가 등에 맞도록 식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